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9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이해식・이기헌・황정아

진선미 • 염태영 • 윤준병

서영석 · 김영호 · 황명선

서영교 · 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않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있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자체 내부방침에 따라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교육감에게학교의 설치·이전 등에 관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

정하는 경우,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용도 해제 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 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제8조의2(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	용도 해제 등) ①		
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			
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			
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			
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u>		
	입안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민과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		
	어 학교용지 용도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